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08
----------	-------

발의연월일 : 2026. 5. 18.

발 의 자 : 주호영 · 김상훈 · 강대식
이인선 · 조인철 · 양부남
권영진 · 김승수 · 정준호
김기웅 · 안도걸 · 정진욱
최은석 · 유영하 · 윤재욱
우재준 · 최혁진 · 백혜련
조지연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이하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대략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사실상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이러한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사업이 앞으로의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의2 신설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을 “따른 지원계획을”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공항개발사업을”을 “군 공항 이전사업을”로, “국토교통부령으로”를 “국방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를 “제4항 및 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에”를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제5항에”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작성하여”를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다른 실시계획의 수립, 승인”으로, “승인이”를 “수립 또는 승인이”로 한

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종전부지의 양여 등)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종전부지를 인계받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은 인계받은 종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전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의”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으로, “제8조제2항에”를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로,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를 “건설사업에”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으로, “외의”를 “및 국방부장관 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를」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로, “정한다”를 “정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2의2. 제9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실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의2. 제9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또는 실시 계획을 위반한 경우

제3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관련 사전 절차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u>다른</u> <u>지원계획을</u>----- -----.</p> <p>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p>

④ (생략)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신설>

③ (생략)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
-----국방부장관이-----

-----.

② 국방부장관-----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방부령으로-----
-----국방부장관-----
-----.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1. ~ 22.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따
른 실시계획의 수립, 승인-----

-----수립 또는 승
인이-----

1. ~ 2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중전부지의 양여 등)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경우 중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생략)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

조치를 한다.

②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종전부지를 인계받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은 인계받은 종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전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적인 범위·규모·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1조(권한의 위임) -----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건설사업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및 국방부장관 외의-----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준공 검사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4. (생략)

5.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9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5.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

③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